

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21호

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12일
부산지방우정청장

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에 관한 고시

1.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

취급국명 (총괄국명)	수탁자	위탁업무	설치장소	해지일자	사유
부산수정 아파트 (동부산)	김창○	필수	부산 동구 망양로 701-1(망양로)	2017.10.31.(화) 업무종료후	계약만료
양산북정 (양산)	이혜○	필수	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20 (북정동)	2017.10.31.(화) 업무종료후	계약만료, 수탁자 희망

2. 우편취급국 재설치(위탁계약 체결) 내역

취급국명 (총괄국명)	위탁예정자	위탁업무	설치장소	취급지역	업무개시일
부산수정5동 (동부산)	조순○	필수	부산 동구 망양로 819-3(수정동)	부산시 동구	2017.11.1.(수)
양산북정 (양산)	천명○	필수	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20 (북정동)	양산시 (불금읍 제외)	2017.11.1.(수)

※ 부산수정아파트우편취급국은 수정5동우편취급국으로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하여 재설치

3. 취급업무

- 가.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
- 나. 우편물 접수
- 다.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

4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(2017.11.2.)까지 유효